

의안번호	2210147
의 퇴 인	이성윤의원
회 답 일	2025.4.28.
추계번호	25D2523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제정안에 따른 특별검사의 임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추가재정소요는 2025~2026년 기간 동안 총 122억 3,100만원으로 추계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6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5	2026	합계
안 제3조(특별검사의 임명), 안 제6조(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안 제8조(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안 제10조(수사기간 등), 안 제11조(재판기간 등), 안 제14조(보수 등)	인건비	3,015	969	3,984
	운영비	6,589	393	6,982
	시설비	1,265	—	1,265
	합계	10,869	1,362	12,231

주: 특별검사, 특별검사보, 특별수사관, 파견검사, 파견공무원은 제정안에서 규정한 최대 인원으로 가정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조제4항(특별검사의 임명)	대통령은 특별검사후보자추천서를 받은 때에는 추천 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함	의무규정
2	안 제6조제4항(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특별검사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 근무 등을 요청할 수 있고, 파견검사의 수는 3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의 수는 60명 이내로 함	재량규정
3	안 제8조(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특별검사는 8명의 특별검사보후보자를 선정하여 대통령에게 임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대통령은 3일 이내에 4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특별검사는 6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특별검사는 수사완료 후 공소유지를 위한 경우에는 특별검사보, 특별수사관 등 특별검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인원을 최소한의 범위로 유지하여야 함(제6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4	안 제10조(수사기간 등)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동안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특별검사는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제3항)	의무규정
		특별검사는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고 그 사유를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함(제4항)	재량규정
		특별검사는 수사기간의 연장에도 불구하고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음(제5항)	재량규정
5	안 제11조(재판기간 등)	특별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재판판결 선고는 제1심에서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함	의무규정
6	안 제14조(보수 등)	특별검사의 보수와 대우는 고등검사장의 예에 준하고, 특별검사보의 보수와 대우는 검사장의 예에 준하고, 특별수사관의 보수와 대우는 3급부터 5급까지 상당의 별정직 국가공무원의 예에 준하며, 특별검사의 퇴직 시까지 특별검사등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함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3조(특별검사의 임명)	0	—
2	안 제6조(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0	—
3	안 제8조(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0	—
4	안 제10조(수사기간 등)	0	—
5	안 제11조(재판기간 등)	0	—
6	안 제14조(보수 등)	0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특별검사,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이하 “특별검사등”이라 함) 임명 및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인건비, 운영비 및 시설비로 나뉘고, 운영규모가 수사기간과 기소 후 공소유지기간 차이가 있으므로 구분하여 추계
- 특별검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 이예람 중사 특검법」이라 함)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이하 “고 이예람 중사 특검”이라 함)의 직무수행에 소요된 경비를 참고
 - 특별검사등의 처우 및 활동기간 등을 제정안과 「고 이예람 중사 특검법」과 비교하면 아래의 표와 같음

[표 2] 제정안과 「고 이예람 중사 특검법」 비교

구 분	제정안	「고 이예람 중사 특검법」
특별검사등의 대우 및 보수 수준	특별검사: 고등검사장 수준 특별검사보: 검사장 수준 특별수사관: 3급~5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 수준	좌동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 인원	특별검사보: 4명 특별수사관: 최대 60명	특별검사보: 최대 4명 특별수사관: 최대 40명
파견검사 및 파견공무원의 수	파견검사: 최대 30명 파견공무원: 최대 60명	파견검사: 최대 10명 파견공무원: 최대 30명
수사기간	170일 이내	120일 이내
공소유지기간	12개월 이내	좌동

- 수사기간에 특별검사보는 4명, 특별수사관은 3급 수사관이 60명 임명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공소유지기간에 직무를 수행하는 인원 및 직급 구성은 「고 이예람 중사 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사례를 준용
 - 실제 운영과정에서는 특별수사관을 정원의 일부만 임명하고, 기타직을 수사인력 보조 등을 위하여 추가 채용하여 운용¹⁾하고 있으나, 현 시점에서 제정안에 따라 임명될 특별수사관과 기타직 수 등을 추정하기 어려우므로,

1) 「고 이예람 중사 특검법」의 경우 특별수사관 정원은 최대 40명이나, 실제 수사기간에 임명한 특별수사관은 5명이고, 기타직 19명을 채용하였음(자료: 법무부)

수사기간에 기타직 없이 모두 특별수사관(3급)을 정원에 따른 최대인원(60명)으로 임명하는 것으로 가정

- 공소유지기간에 유지하는 인원은 고 이예람 중사 특검의 공소유지기간 활동인원의 인원 수와 구성²⁾을 참고하되, 기타직은 특별수사관(3급)으로 임명한다고 가정하여 추계에 반영함

□ 파견인원은 최대인원인 90명으로 가정

- 제정안은 특별검사로 하여금 관계기관으로부터 검사는 30명 이내, 공무원 60명 이내에서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사기간에 최대인원인 검사 30명, 공무원 60명을 파견한다고 가정
- 파견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원 소속기관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³⁾

□ 제정안에 따른 특별검사등의 경비 등에 대한 단가는 고 이예람 중사 특검의 경비집행내역⁴⁾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⁵⁾ 및 소비자물가상승률⁶⁾을 반영하여 산정함

- 2) 특별검사 1명, 특별검사보 2명, 특별수사관 6명, 기타직 1명, 파견공무원 2명(공소유지기간 중 퇴사 등으로 전체 공소유지기간 인원 수와 직급별 인원의 변동이 있었음)(자료: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사무국, (2024.6.13.))
- 3) 파견인원의 인건비는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원 소속기관에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
- 4) 고 이예람 중사 특검 관련 경비 집행 내역: 2022년 및 2023년

(단위: 백만원)

	수사기간 (2022.5.16. ~ 2022.9.12.)	공소유지기간 (2022.9.13. ~ 2023.12.31.)
직무활동 운영비 ¹⁾	1,727	525
시설비 ²⁾	407	172

주: 1. 수사기간 활동인원은 총 62명(특별검사 1명, 특별검사보 3명, 특별수사관 5명, 기타직 19명, 파견인력 34명)이었으며, 공소유지기간 활동인원은 12명(특별검사 1명, 특별검사보 2명, 특별수사관 6명, 기타직 1명, 파견인력 2명)임

2. 시설비는 사무실 리모델링에 따른 공사비 등

3. 2022년 9월 13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소요된 경비만을 집계하여 공소유지기간 경비 집행내역을 산정함

자료: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사무국, (2024.6.13.)

5) 공무원임금평균상승률 (2025.3. 경제전망 기준)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공무원임금평균상승률	1.7%	2.5%	3.0%	2.4%	2.4%	2.4%	2.4%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6) 소비자물가상승률(2025.3. 경제전망 기준)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소비자물가상승률	3.6%	2.3%	1.9%	2.0%	2.0%	2.0%	2.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특별검사에게 지급하는 직무수행경비는 운영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가정
 - 고 이예람 중사 특검의 수사기간은 4개월(2022.5.16.~ 2022.9.12.)이고, 운영비와 시설비는 2022년 수사기간(4개월) 및 공소유지기간(15.5개월, 2022.9.13.~ 2023.12.31.) 지출된 비용을 참고하여 추계
 - 시설비는 2025년에 모두 발생한다고 가정
- 수사기간은 170일, 공소유지기간은 12개월로 가정
- 현 시점에서 실제 수사기간 및 공소유지기간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제정안에 따른 수사기간 및 공소유지기간은 각각 최장 기간(170일, 12개월)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함
- 제정안 부칙이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5년~2026년으로 함
- 제정안에 따라 2025년 6월부터 수사준비를 시작하여 11월까지 총 170일 동안 수사를 마무리하고 11월부터 2026년 11월까지 1년 동안은 공소유지기간으로 가정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인건비

- 수사기간(170일) 및 공소유지기간(12개월) 동안 소요되는 특별검사등의 인건비는 고 이예람 중사 특검 당시 지급된 2023년 기준 보수에 국회 예산정책처가 전망한 공무원임금 상승률을 반영하여 추계

[표 3] 고 이예람 중사 특검 당시 지급 보수(2023년 기준)

(단위: 원)

직급	월 평균 보수
특별검사	12,079,000
특별검사보	10,936,000
특별수사관(3급)	7,139,000

자료: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사무국, (2024.6.13.)

- 공무원임금 상승률을 적용한 월 보수에 2025년 수사기간(170일) 및 공소유지기간(12개월)에 해당하는 인건비 소요액은 다음의 표와 같음

[표 4] 수사기간에 소요되는 특별검사등의 인건비 추정: 2025년

구분	1인당 월 보수 (A, 백만원)	인원(B, 명)	기간(C, 개월)	재정소요(D) (=A×B×C, 백만원)
특별검사	12.8	1	5.7	73
특별검사보	11.5	4	5.7	262
특별수사관(3급)	7.5	60	5.7	2,565
합계	—	65	—	2,900

주: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계산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사무국(2024.6.13.)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5] 공소유지기간에 소요되는 특별검사등의 인건비 추정: 2025~2026년

구분	2025				2026				재정소요 합계 (D+H, 백만원)
	1인당 월 보수 (A, 백만원)	인원 (B, 명)	기간 (C, 개월)	재정소요 (D) (=A×B×C, 백만원)	1인당 월 보수 (E, 백만원)	인원 (F, 명)	기간 (G, 개월)	재정소요 (H) (=E×F×G, 백만원)	
특별검사	12.8	1	1.3	17	13.1	1	10.7	140	157
특별검사보	11.5	2	1.3	30	11.8	2	10.7	253	282
특별수사관(3급)	7.5	7	1.3	68	7.7	7	10.7	577	645
합계	—	10	—	115	—	10	—	970	1,084

주: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계산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사무국(2024.6.13.)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수사기간 및 공소유지기간 동안 소요되는 인건비 총액은 39억 8,400만원으로 추계

[표 6] 수사기간 및 공소유지기간에 소요되는 인건비 추정: 2025~2026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5		2026	합계
	수사기간	공소유지기간	공소유지기간	
인건비	2,900	115	969	3,984

나. 운영비

- 특별검사의 운영비는 고 이예람 중사 특검 당시 소요된 운영비를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추계
- 수사기간 운영비는 총 65억 4,200만원으로 추계
 - 고 이예람 중사 특검 수사기간(4개월) 직무활동 운영비 1명당 단가⁷⁾에 국회 예산정책처가 전망한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수사기간 활동인원 수⁸⁾를 적용
- 공소유지기간 운영비는 총 4억 4,000만원으로 추계
 - 고 이예람 중사 특검 공소유지기간(15.5개월) 직무활동 운영비 1명당 단가⁹⁾에 소비자물가상승률과 공소유지기간 동안의 활동인원 수¹⁰⁾를 적용
- 수사기간 및 공소유지기간 소요되는 운영비 총합은 69억 8,200만원으로 추계

[표 7] 제정안에 따른 운영비 추정: 2025~2026년

구분		2025년				2026년				합계 (D+H, 백만원)
		1인당 재정소요 (A, 백만원)	인원 (B, 명)	기간 (C, 개월)	재정소요 (D=A×B×C, 백만원)	1인당 재정소요 (E, 백만원)	인원 (F, 명)	기간 (G, 개월)	재정소요 (H=E×F×G, 백만원)	
운영비	수사기간	7.4	155	5.7	6,542	-	-	-	-	6,542
	공소유지 기간	3.0	12	1.3	47	3.1	12	10.7	393	440
합계		-	-	-	6,589	-	-	-	393	6,982

주: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계산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사무국(2024.6.13.)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다. 시설비

- 시설비는 고 이예람 중사 특검 당시 소요된 시설비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추계

7) 수사기간의 직무활동운영비(17억 2,700만원)를 개월 수(4개월)와 활동인원(62명)으로 나누어 산출. 해당 금액을 2022년 지출 단가로 가정하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함

8) 총 205명(특별검사 1명, 특별검사보 4명, 특별수사관 80명, 파견인력 120명)

9) 공소유지기간의 직무활동운영비(5억 2,500만원)를 개월 수(15.5개월)와 활동인원(12명)으로 나누어 산출, 해당 금액을 2022년 지출 단가로 가정하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함

10) 총 12명(특별검사 1명, 특별검사보 2명, 특별수사관 7명, 파견인력 2명)

□ 수사기간 시설비는 총 10억 8,200만원으로 추계

- 고 이예람 중사 특검 수사기간에 사용한 시설비 1인당 단가¹¹⁾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수사기간 활동인원 수를 적용

□ 공소유지기간 시설비는 총 1억 8,300만원으로 추계

- 고 이예람 중사 특검 공소유지기간에 사용한 시설비 1인당 단가¹²⁾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소비자물가상승률과 공소유지기간 활동인원 수를 적용

□ 시설비 총액은 다음의 표와 같이 12억 6,500만원으로 추계

[표 8] 제정안에 따른 시설비 추정: 2025년

(단위: 명, 백만원)

구분		1인당 재정소요 (A, 백만원)	인원(B, 명)	재정소요(C) (=A×B, 백만원)
시설비	수사기간	7.0	155	1,082
	공소유지기간	15.2	12	183
합계		-	-	1,265

주: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계산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사무국(2024.6.13.)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라. 추계결과

□ 제정안에 따른 특별검사의 임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추가재정소요는 2025~2026년 기간 동안 총 122억 3,100만원으로 추계

[표 9]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6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5	2026	합계
안 제3조(특별검사의 임명), 안 제6조(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안 제8조(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안 제10조(수사기간 등), 안 제11조(재판기간 등), 안 제14조(보수 등)	인건비	3,015	969	3,984
	운영비	6,589	393	6,982
	시설비	1,265	-	1,265
	합계	10,869	1,362	12,231

11) 수사기간의 시설비(4억 700만원)를 활동인원(62명)으로 나누어 산출, 해당 금액을 2022년 지출 단가로 가정하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함

12) 공소유지기간의 시설비(1억 7,200만원)를 활동인원(12명)으로 나누어 산출, 해당 금액을 2022년 지출 단가로 가정하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함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특별검사의 직무수행 시점을 2025년으로 가정하였고, 특별 수사관 및 파견인원을 제정안에 규정된 최대 인원으로 가정한 것으로, 실제 제정안 시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추계와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장삼열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장삼열	02-6788-4831	jsy@assembly.go.kr